

2. 신향세력의 출현

조선 후기 지방사회의 변화는 크게 경제적인 변화와 신분체제의 이완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신향세력의 성장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변화와 신분제의 변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실제로 순천지역의 저명 성씨로 기록된 수가 조선 전기나 중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이르면 3~4배로 급증한다. 이들 새로운 성씨세력의 읍지류 등재나 그들의 사회적 발신(發身)은 분명 새로운 면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 이후 조선 후기 지방사회에서는 사회경제 변화에 짝하여 여러 부류의 새로운 세력들이 출현하였다. 대체로 이들의 성장은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의 신향세력들은 농지의 확대, 농업생산력의 증가, 상품유통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력을 소유하게 된 층이었다.

이들의 일부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향촌 운영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수령권을 강화하고, 과거 사족들과의 제휴를 통한 지방 통치 방식을 바꾸어, 신향세력을 하부조직으로 동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부세의 수취와 부족한 재정의 확보는 당시 지방관들의 1차 책무였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동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한편 신향세력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수단으로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였고, 지방관과의 일정한 유대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양자간의 타협과 결합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신향양반의 증가였다.

18세기는 노론의 전제와 탕평정국, 신분분화의 촉진, 농업생산력과 상품경제의 발전, 실학과 민중의식의 성장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성격들이 지적된 시기이다. 기존의 향촌사회사 연구는 이 같은 18세기를 대체로 '향안질서의 해체시기'로 파악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분열' 혹은 '유향의 분기'를 그 특징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수령권의 강화가 가능했던 배경이나 지배정책과 내용에 대한 고찰은 과제로 남겨진 상태였고, 사족의 분열과 향권의 상실에 관하여서도 사족분열보다는 그것이 사족세력의 증대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논자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향권에 도전하는 '신향' 세력의 실체와 성격도 논자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18세기 조선 향촌사회사 연구는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신향세력 중에는 이 같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외에 양반가문이었으면서도 기왕에 사회적으로 크게 발신하지 못하였던 가문이 이 시기에 이르러 함께 부상한 경우도 있다. 이들 가문의 부상은 학문적 전통이나 토착적인 기반의 차이에 따라 가문의 우열을 가르던 기준이 점차 다른 것으로 바뀐 데 기인하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반도 두 부류로 나뉘어 기존의 전통양반들은 구향(舊鄉) 또는 원향(元鄉), 양반사족(兩班士族), 재지사족(在地士族), 사족(士族), 사림(士林), 유생(儒生), 유림(儒林) 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새로이 양반 신분을 획득한 신향양반들은 신향(新鄉) 또는 향품(鄉品), 향족(鄉族), 향반(鄉班) 등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향촌운영기구에 신향세력이 참여하는 것은 향촌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사족세력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로 다가왔고 결국은 이들 두 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의 현상들은 '향전(鄉戰)'이라는 노골적인 형태에서, 각 향촌운영의 기구에서 보이는 주도권 다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신흥세력·신흥양반층의 성장은 합법적, 비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평민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은 국가에 공이 있어 포상을 받는 것이었다. 예컨대 왜란이나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인좌의 난 등 여러 형태의 사회변란에서 공을 세우거나 순절하여, 벼슬을 받거나 충절인으로 포상을 받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는 모두 1,460명의 유공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양반이 아닌 평민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 평민이었던 자들은 『호남절의록』에 기록됨으로써 양반으로 행세를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력이 있는 평민이 국가나 지방재정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에 곡식을 바치고 받는 '납속직(納粟職)'이나, 아예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곡식이나 돈을 받고 관직이나 품계를 파는 '공명첩(空名帖)'도 신분상승을 조장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납속을 할 수 있던 신분계층이 양반이나 향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실제 다수의 평민이나 천민들에게도 납속이 허락되었다. 이제 부유한 평민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양반신분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의 평민들은 비합법적 방법으로 양반신분을 모칭하기 시작하였다. 평민들이 양반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은 호적 업무를 다루는 향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호적에 자기들의 신분을 양반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족보에 자기 가문을 왕족이나 국가 유공자 가문, 관리 배출자 가문으로 허위 기재하여 가짜 양반 족보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빈궁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그 후손으로 거짓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평민들이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여 신분을 양반으로 올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양반 호칭은 '유학(幼學)', '유생', '학생(學生)'이었다.

이 같이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평민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려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양반이 되면 그들에게 몇 가지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양반들은 군역이나 요역에서 면제되었고, 전세나 환곡의 부담 때 향리나 토호들의 중간 농간을 받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평민들은 이러한 세금의 면제나 경감을 위해 앞을 다투어 양반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평민들이 부담했던 군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역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군역과 관련하여 그의 저서 『허유당전서』에서 “대개 양반이 된 이후에 비로소 군포의 납부를 면하는 까닭으로 백성이 밤낮으로 피하는 것은 오직 양반이 되려는 것”이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잘 대변한다.